



공유협업지원센터 규정

제정일	2022. 3. 1
개정일	2022.10. 1
개정차수	2차
담당부서	공유협업지원센터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가 수행하는 산학협력 업무를 지원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업협업, 지원 업무에 관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위하여 공유협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대학과 산업체, 대학과 대학간의 산학협력자원 개방, 공유 및 협업을 통한 산학협력 연계 강화
2.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3. 기업 맞춤형 재직자 교육 과정 개발, 운영 및 지원
4. 대학 내 산학협력 자원 및 네트워크의 종합적 연계
5. 가족회사 및 DU BEST 200 운영
6. 산학협력 포럼 행사 운영
7. 산학협력 데이터 집적화 및 산업체 연계망 구축
8. 연구재단 산하 산업교육센터와 연계
9. 그 외 산학협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협업·지원 업무 등

제 3조 (조직) 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22.10. 1)

-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④ 대학과 외부와의 관계 형성 및 맞춤형 매칭 관리를 위해 정보담당관을 둘 수 있다. (신설 2022. 9. 1)

제 4조 (운영위원회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
- ②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.

1. 산학협력자원 개방, 공유 및 협업 사업계획 수립
2. 센터의 예산 수립, 센터 활동 결과 평가 및 환류
3. 기타 기업협업·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며,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5조 (재원 및 회계) ① 산학협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에 편입하여 관리한다.

② 센터의 재원 집행은 재원 기관의 지침에 의하여 집행하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관련 집행 지침을 준용한다.

③ 예산과 결산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관리한다.
제 6조 (운영세칙) 기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